

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 7.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수정이유

- 가.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시정현안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업무의 성격, 중요도, 난이도 등에 맞게 직급을 정하며,
- 나.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에서 ‘국단위’ 한시기구로 승인(‘07. 6. 27)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(3급)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4,710명을 4,730명으로 함(안 제2조 본문).
- 나. 집행기관의 정원 3,170명을 3,189명으로 함(안 제2조 제1호).
- 다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72명을 73명으로 함(안 제2조 제2호).
- 라. 본청 정원 1,379명을 1,390명으로, 의회사무처 정원 72명을 73명으로, 직속기관 정원 1,540명을 1,539명으로, 사업소 정원 1,719명을 1,728명으로 함(안 별표).

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: 붙임(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, 제19조 및 제21조)
- 다. 예산조치 :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
- 라. 입법예고 : 입법예고(2007. 5. 25 ~ 5. 30, 2007. 7. 2 ~ 7. 5)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
- 마. 기 타 : 비용소요 추계서(붙임)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4,710명”을 “4,730명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1호 중 “3,170명”을 “3,189명”으로 하며, 같은조 제2호 중 “72명”을 “73명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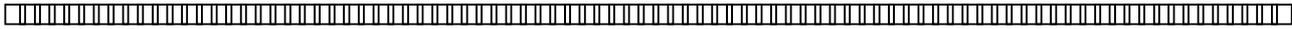
제2조(한시정원)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의 정원(집행기관) 14명(3급 1명, 4급 1명, 5급 2명, 6급 5명, 7급 4명, 기능9급 1명)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.

(별표)

대구광역시직급별지방공무원정원표(제3조관련)

직급별 \ 기관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
총 계	4,730	1,390	73	1,539	1,728
정무직계	1	1			
시 장	1	1			
일반직계	2,076	1,096	42	46	892
2-3급	1		1		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
3급	13	9		1	3
3-4급	1	1			
4급	75	45	2	4	24
5급	278	200	5	9	64
6급	640	397	15	14	214
7급	727	386	19	11	311
8급	294	58		7	229
9급	47				47
연구직계	132	4		73	55
연구관	16			14	2
연구사	116	4		59	53
지도직계	28			28	
지도관	2			2	
지도사	26			26	
별정직계	64	25	9	1	29
1급상당	1	1			
3급상당	1	1			
4급상당	8	2	5		1
5급상당	8	4	3		1
6급상당	15	11		1	3
7급상당	23	5	1		17
8급상당	8	1			7
소방공무원계	1,468	104		1,364	
소방정	10	3		7	
소방령	31	12		19	
소방경	74	6		68	
소방위	76	12		64	
소방장	212	20		192	
소방교	455	33		422	
소방사	610	18		592	
기능직계	961	160	22	27	752
6급	35	6			29
7급	95	13	2	3	77
8급	168	22	3	2	141
9급	356	70	9	5	272
10급	307	49	8	17	233



현행·개정안·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대구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4,710명</u> 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3,170명</u>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72명</u> 3. (생략)	제2조(정원의 총수)----- ----- ---- <u>4,729명</u> ----- ----- 1. ----- <u>3,188명</u> 2.----- <u>73명</u> 3. (현행과 같음)	제2조(정원의 총수)----- ----- ---- <u>4,730명</u> ----- ----- 1. ----- <u>3,189명</u> 2. (개정안과 같음) 3. (개정안과 같음)

관 계 법 령

[지방자치법]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(생략)

[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]

제13조(정원책정의 일반기준) ①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,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.

- 1.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
- 2.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·난이도·책임도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
- 3.~5. (생략)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시·도의 경우 : 본청, 의회사무처, 합의제행정기관, 직속기관, 출장소, 사업소
- 2. (생략)

제19조(한시정원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.

②(생략)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.

④삭제

⑤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 조정할 수 없다.

⑥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⑦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.

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제21조(정원의 규정)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 한다)
- 2. 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소용비용 추계서

(단위:원,명)

직 급		연봉(차액)	인 원	소요비용	비 고
계			순증 20명	447,357,230	
일 반 직	소 계		순증 23명	524,895,410	
	6급 → 5급	5,262,930	1	5,262,930	
	7급 → 6급	2,024,910	8	16,199,280	
	8급 → 7급	1,905,420	23	43,824,660	
	9급 → 8급	1,431,580	23	32,926,340	
	9급	18,551,400	23	426,682,200	
별 정 직	소 계		순감 2명	△118,443,860	
	6급	52,119,970	△2	△104,239,940	
	7급	42,589,900	△1	△42,589,900	
	7급	22,311,250	1	22,311,250	
	7급 → 6급	2,024,910	3	6,074,730	
연 구 직	소 계		순증 3명	68,367,000	
	연구사	22,789,000	3	68,367,000	
소 방 직	소 계		순증 없음	61,906,320	
	소방위→소방경	4,421,880	14	61,906,320	
기 능 직	소 계		순감 4명	△89,367,640	
	10급	22,341,910	△4	△89,367,640	

※ 직급상향에 따른 연봉차액은 각 직급 기준호봉의 차액.